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696, 3697, 3698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여성가족실)



2026. 6. 17.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3696, 3697, 3698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6. 6. 27.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611,261백만원
- 징수결정액 : 1,566,196백만원
- 실제수납액 : 1,561,262백만원
- 정리보류액 : 0.2백만원
- 미수납액 : 4,934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7%(전년도 99.7%)임.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611,261	1,566,196	1,561,262	0	4,934	99.7%
일	반 회 계	1,584,931	1,540,049	1,535,115	0	4,934	99.7%
	세 외 수 입	105,139	86,009	81,075	0	4,934	94.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184	2,732	2,639	0	94	96.6%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2,063	78,976	75,713	0	3,262	9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9	-	0	19	0.0%
	지 난 연 도 수 입	11,893	4,282	2,723	0	1,559	63.6%
	보 조 금	1,221,541	1,211,698	1,211,698	0	0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1,221,541	1,211,698	1,211,698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8,251	242,342	242,342	0	0	100.0%
	보 전 수 입 등	6,772	5,758	5,758	0	0	100.0%
	내 부 거 래	251,479	236,584	236,584	0	0	100.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6,330	26,147	26,147	0	0	100.0%
	보 조 금	25,987	25,803	25,803	0	0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25,987	25,803	25,803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	344	344	0	0	100.0%
	보 전 수 입 등	344	344	344	0	0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3,353,966백만원
- 예산증감 : 3,089백만원
- 예산현액 : 3,357,055백만원
- 지출액 : 3,294,403백만원
- 이월액 : 968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4,618백만원

○ 불용액 : 57,06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7%(전년도 1.5%)가 발생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57,065	10,699	89	8,120	614	37,543	-

〈2025년도 여성가족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율 (E/A)
합 계	3,353,966	3,357,055	3,294,403	98.1%	968	4,618	57,065	1.7%
일 반 회 계	3,269,317	3,271,667	3,210,143	98.1%	968	4,491	56,065	1.7%
저 출 생 담 당 관	151,371	153,721	152,571	99.3%	0	0	1,150	0.7%
양 성 평 등 담 당 관	92,084	92,084	90,430	98.2%	0	34	1,620	1.8%
영 유 아 담 당 관	2,122,783	2,122,783	2,093,034	98.6%	0	40	29,709	1.4%
아 이 돌 보 담 당 관	58,753	58,753	53,944	91.8%	968	0	3,841	6.5%
아 동 담 당 관	632,912	632,912	623,164	98.5%	0	2,987	6,761	1.1%
가 족 담 당 관	210,350	210,350	196,002	93.2%	0	1,430	12,918	6.1%
아 동 복 지 센 터	1,064	1,064	998	93.8%	0	0	66	6.2%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84,649	85,388	84,260	98.7%	0	127	1,000	1.2%
영 유 아 담 당 관	3,835	3,835	3,834	100.0%	0	1	0	0.0%
아 이 돌 보 담 당 관	46,680	47,419	46,847	98.8%	0	115	456	1.0%
아 동 담 당 관	34,134	34,134	33,579	98.4%	0	11	544	1.6%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6건, 316백만원

다. 예산 이체 :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9건, 14,643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1건, 2,350백만원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1개 사업, 968백만원

- 명시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1건, 968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 령 액 : 1,237,501백만원

- 집 행 액 : 1,232,786백만원

- 이 월 액 : 없음

- 집행잔액 : 4,715백만원

〈2025년도 여성가족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237,502	1,232,787	0	4,715
일 반 회 계	1,211,698	1,207,207	0	4,491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5,804	25,580	0	224

3. 기금결산

- 당해년도말 조성액 : 25,645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 24,335백만원
- 당해년도 조성액 : 2,811백만원
- 당해년도 사용액 : 1,501백만원

〈2025년도 양성평등 가족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24,335	1,310	2,811	1,501	25,645

〈기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3,946	100%	계	3,946	100%
전 입 금	100	2.53%	비 용 자 성 사 업 비 (고유목적사업비)	1,491	37.80%
전년도 이월액	107	2.70%	기 본 경 비	9	0.24%
예탁금 원금회수	-	-			
예 치 금 회 수	1,028	26.06%	예 치 금	2,445	61.96%
이 자 수 입	825	20.90%			
기 타 수 입	1,886	47.81%			

4. 채권현재액 : 11,6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현재액 ①	2025년말 현재액 ②	전년대비 증감 ③ = ②-①
금 액	62,435	61,659	△776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여성가족실 관리 공유재산

- 건물 155,994㎡ 15,938,633만원,
- 기타 55건 31,849,860만원,

총 47,788,493만원 상당의 금액

〈2025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56,166			477,884
행정 재산	계	454,528	21,718		476,246
	공용재산	287,236	20,724		307,960
	공공용재산	167,292	994		168,286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1,638			1,638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5년도말 여성가족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35개,
현재액 476백만원

〈 2025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5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145	1	3	4	1	13	14	135
	금액	499	60	2	62	22	63	85	476
일반회계	수량	145	1	3	4	1	13	14	135
	금액	499	60	2	62	22	63	85	476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113억원으로 1조 5,662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5,61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억원으로 징수율은 99.7%임.
-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 1조 4,333억원에서 2025년 1조 6,11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징수율은 2021년 99.3%에서 2025년 99.7%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미수납액 규모가 2021년 103억원에서 2025년 49억원으로 5년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점은 전체적으로 세입 행정이 안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1〉 여성가족실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
2025년	1,611,261	1,566,196	1,561,262	0.2	4,934	99.7
2024년	1,613,713	1,580,632	1,575,869	24	4,739	99.7
2023년	1,518,052	1,502,699	1,496,196	5	6,497	99.6
2022년	1,463,101	1,492,523	1,484,426	31	8,066	99.5
2021년	1,433,296	1,430,402	1,420,078	-	10,324	99.3

- 세입 구성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조 2,475억원(7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86억원(16.1%), 세외수입 1,051억원(6.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2022년 아동수당(매월 10만원) 지원연령이 확대(7→8세 미만)¹⁾,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0세 70→100만원, 1세 35→50만원), 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대상이 보호대상아동에서 국민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비중은 2021년 71.1%에서 2025년 77.4%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2〉 2025년도 여성가족실 주요 세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4		2023		2022		2021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1,611,261	100	1,613,713	100.0	1,518,052	100.0	1,463,101	100.0	1,433,296	100.0
세외수입	105,139	6.5	102,224	6.3	74,306	4.9	63,868	4.4	73,590	5.1
보조금	1,247,527	77.4	1,253,946	77.7	1,165,111	76.8	1,073,762	73.4	1,019,617	71.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8,595	16.1	257,543	16.0	278,636	18.3	325,441	22.2	339,849	23.7
지방 교부세	-	-	-	-	-	-	30	0.0	240	0.0
지방채	-	-	-	-	-	-	-	-	-	-

1) 2026년부터는 만9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1)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

-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의 미수납액은 총 49억 3,379만원으로, 주요 발생원인은 자치구 보조금 반납 예산편성 지연(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8억 9,734만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그외수입 3억 5,001만원) 등임.

〈표-3〉 2025년도 여성가족실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정보보류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액 발생사유
계	98,083,627	81,010,606	76,076,627	194	4,933,785 (100%)	-
22301 사·도비보조금 등반환수입	85,059,147	72,848,184	69,950,849	-	2,897,335 (58.7%)	자치구 반납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미반납
24101 지난연도 수입	11,892,825	4,275,796	2,717,098	194	1,558,504 (31.6%)	자치구 반납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미반납
21603 기타이자수 입	648,558	2,570,604	2,514,572	-	56,032 (1.1%)	자치구 반납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한 미반납
22302 자체보조금 등반환수입	266,605	37,214	22,108	-	15,106 (0.3%)	자치구 반납 지연으로 인한 미반납
22407 그외수입	130,233	1,179,118	829,105	-	350,013 (7.1%)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임대차 계약 만료('25.4.5.)이후 임대인측 전세금 미반환 (38세금징수와 인계)
21405 기타사업수입	86,259	80,563	42,895	-	37,668 (0.8%)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사업 종료 및 정산 이후 '25.12월 말 고지서 발급으로 연내 미수납(26.1월 수납완료)

23301 변상금	0	19,127	0	-	19,127 (0.4%)	서울여담재 부지 일부(183.1㎡)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변 상금 부과금 체납 (38세금징수와 연계)
--------------	---	--------	---	---	------------------	---

- 그외수입 중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전세금 3억 5,001만원은 2025.4.5.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38세금징수과에 인계하여 징수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장기 미회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전체 미수납액의 91.7%인 45억 2,698억원이 자치구 반납 예산 편성 지연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치구와 정산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조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2)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²⁾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세입은 총 9건으로, 5억 6,08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세입예산 편성없이 수납된 세입 중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과

2)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2025년 본예산 편성(2024.5.) 이후 2024.7.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하였다고 함.

- 그러나 예산 편성 후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 세입예산을 조직개편에 맞게 편성할 여력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표-4〉 2025년도 여성가족실 세입예산 편성없이 수납된 세입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계 (총9건)		562,432	560,866	1,567	-
21603 기타이자 수입	-	1,927	1,927	-	· (아동복지센터) 공금계좌 이자수입 발생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	3,850	3,850	-	· (아동복지센터) 공무용차량 매각수입 발생
22301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	381,587	380,021	1,567	· (양성평등담당관) '24.7월 조직개편으로 1인가구담당관(안심이 관제운영사업비 등)에서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조직개편 이전인 '25년 본 세입예산편성('24.5월)시 세입 편성 불가, 관련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	54,524	54,524	-	· (저출생담당관) '24.7월 신설부서로 조직개편 이전인 '25년 본 세입예산 편성('24.5월)시 세입 편성 불가, 관련 위탁비반환수입 발생
22407 그외수입	-	114,402	114,402	-	· (저출생담당관) 임산부 교통비 부정수급 환수금 발생 · (가족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 월세 지원 사업 환수금 발생, 과오지급 수당 발생

					· (아이돌봄담당관) 2024년서울상상나라사업및시립서울형키즈카페민간위탁금정산에따른기타잡수입및서울형키즈카페머니상품권선불충전금의이자액발생 · (아동복지센터) 공무용차량 매각, 폐차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환급 발생
24101 지난연도 수입	-	6,142	6,142	-	· (저출생담당관) '24.7월 신설부서로조직개편 이전인 '25년 본 세입예산편성('24.5월)시 세입 편성 불가, 관련 지난연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반환금 발생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조 3,571억원으로, 3조 2,944억원을 지출하고, 9억 6,835만원을 이월하고, 46억 1,797만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불용액은 570억 6,493만원으로 불용률은 1.7%임.
- 최근 5년간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1년 2.8%에서 2025년 1.7%로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불용액이 약 78억원 정도 증가하였음.

〈표-5〉 여성가족실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5	3,353,966	3,357,055	3,294,403	968	4,618	57,065	1.7%
2024	3,321,279	3,323,624	3,268,648	739	5,022	49,216	1.5%
2023	3,183,283	3,185,072	3,070,285	2,346	5,926	106,515	3.3%
2022	2,983,635	2,983,899	2,887,098	991	6,374	89,436	3.0%
2021	2,857,993	2,870,435	2,784,908	1,874	4,250	79,403	2.8%

-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각종 예산변경 내역은 전용 6건으로 3억 1,595만원, 변경사용 29건으로 146억 4,271만원으로 나타남.

- 또한 예비비 사용 1건, 23억 5,000만원, 불용률이 20%이상인 사업은 17건으로 70억 1,747만원으로 나타남.

〈표-6〉 여성가족실 최근 5년 간 각종 예산변경 등 추이

(단위 : 백만원, 건)

회계 연도	여성가족실 소관사업 및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사용		불용 (20%이상)	
	사업 수	예산총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2025	204	3,357,055	-	-	6	316	-	-	29	14643	1	2,350	17	7,017
2024	207	3,323,624	-	-	5	323	55	232,163	23	8,026	-	-	10	2,013
2023	253	3,183,284	-	-	12	784	15	122,167	30	20,010	6	798	29	34,268
2022	226	2,983,899	-	-	5	77	191	794,528	33	4,633	-	-	23	12,121
2021	203	2,870,435	-	-	20	1,066	4	△1,288	21	3,301	-	-	9	5,115

- 최근 5년간 각종 예산변경 등의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의 변경사용 금액은 2023년 약 2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4년 약 8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 들어 146억 4,271만원으로 다시 급증하였음.
- 또한, 불용률이 20% 이상인 부실 집행 사업 역시 2023년 29개(약 342억원)에서 2024년 10개(약 20억원)로 크게 개선되었다가 2025년 17개 사업, 70억 1,700만 원으로 사업 수와 불용액 모두 다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재증가 추세는 본예산 편성 당시의 수요예측이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도 중 선제적인 감추경을 실시하는 등 재정 운용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임.

나. 세출결산 검토의견

1)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³⁾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⁴⁾, 이용·이체⁵⁾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7〉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5)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⁶⁾에 따라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전용은 총 6건, 3억 1,5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8>와 같음.

<표-8>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6건)				27,346,772	315,947	315,947	-	2,486,809
1	아이돌봄 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808,400	7,390	0	2025-10-13	596,619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공공운영비	4,000	0	7,390		3,545
2	아이돌봄 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883,136	74,736	0	2025-10-13	596,619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사무관리비	885,222	0	74,736		5,492
3	아동 담당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33,443	3,000	0	2025-09-19	0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	0	3,000		0
4	아동 담당관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4,000	139,200	0	2025-03-27	0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사무관리비	0	0	139,200		125,200

- 6)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5	가족 담당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84,382	50,000	2025-08-28	9,575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지원	시설비	0	0		401
6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10,736,782	41,621	2025-10-30	1,140,757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문사 업보조(이전 재원)	228,407	0		8,602

-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사업에 거점형 키움센터(노원 1호, 종로 3호)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인상분 반영을 사유로 사무관리비 목에 7,473만 6천 원을 증액 전용하였음.
-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만료⁷⁾와 이에 따른 임차료 인상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인 바, 이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밀한 예산 편성이 부족했음을 보여 줌.
- 또한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 사업에 ‘더 힐스 남산 웨딩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목으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공간 확충은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예산 전

7) (임대차 재계약 현황)

- 노원 1호 : 재계약 '25.1.1.~'30.5.31.
- 종로 3호 : 재계약 '25.7.14.~'26.8.19.

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계획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음.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의 경우 총 29건, 변경금액은 146억 4,271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9>와 같음.

<표-9>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29건)				3,279,676,931	14642,711	14642,711	-	19,521,081
1	저출생 담당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022,000	228,000	0	2025-09-29	609,448
		서울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439,140	0	228,000		0
2	저출생 담당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484,000	462,000	0	2025-09-25	609,448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 출산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54,000	0	462,000		0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29건)				3,279,676,931	14642,711	14642,711	-	19,521,081
3	저출생 담당관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73,600	600,000	0	2025-08-08	0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 출산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54,000	0	600,000		0
4	저출생 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114,800	500	0	2025-12-16	66,420
		기본경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37,800	0	500		0
5	양성평등 담당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734,540	30,000	0	2025-10-01	388
		여성발전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595,798	0	30,000		5,831
6	양성평등 담당관	여성능력 개발원 운영	민간위탁금	3,343,958	96,000	0	2025-10-01	0
		여성발전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499,798	0	96,000		5,831
7	양성평등 담당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6,280	1,150	0	2025-10-17	15,69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이 전재원)	8,590	0	1,150		0
8	양성평등 담당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40,000	3,720	0	2025-04-29	15,69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720	0	3,720		0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29건)			3,279,676,931	14642,711	14642,711	-	19,521,081	
9	양성평등 담당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자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625,609	16,019	0	2025-10-15	334,75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576,507	0	16,019		0
10	양성평등 담당관	시립 늘푸 른교육센터 운영(자체)	민간위탁금	836,032	29,212	0	2025-03-05	14,432
		시립 십대 여성 일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9,432	0	29,212		1,572
11	양성평등 담당관	시립 십대여성 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809,113	30,000	0	2025-11-21	224,758
		시립 십대여성 건강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0	0	30,000		0
12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4,969,851	1,088,759	0	2025-12-03	2,662,55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1,089,877	0	1,088,759		2,063,963
13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540,776	1,768,335	0	2025-12-03	1,082,65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6,321,542	0	1,768,335		2,063,963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29건)				3,279,676,931	14,642,711	14,642,711	-	19,521,081
14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319,735	3,000,000	0	2025-12-03	298,4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8,089,877	0	3,000,000		2,063,963
15	영유아 담당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839,334	260,000	0	2025-12-03	1,093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46,834	0	260,000		0
16	영유아 담당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409,570	570,236	0	2025-11-28	1,093
		부모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1,230,232	0	570,236		0
17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653,450	4,333,715	0	2025-11-28	298,418
		부모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6,896,517	0	4,333,715		0
18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491,060	505,838	0	2025-11-28	0
		부모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1,800,468	0	505,838		0
19	아이돌봄 담당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9,872,000	226,000	0	2025-03-18	2,187,090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108,287	0	226,000		69,264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29건)				3,279,676,931	14,642,711	14,642,711	-	19,521,081
20	아이돌봄 담당관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시설비	2,312,500	55,000	0	2025-12-22	343,098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564,687	0	55,000		69,264
21	아이돌봄 담당관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시설비	2,320,000	7,500	0	2025-12-01	343,098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감리비	0	0	7,500		0
22	아이돌봄 담당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7,846,000	60,000	0	2025-12-01	2,187,090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민간위탁사 업비	504,687	0	60,000		69,264
23	아동 담당관	자립준비청 년 자립지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26,580	11,400	0	2025-12-16	144,475
		전문가정 위탁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 원)	301,541	0	11,400		62,941
24	아동 담당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 원)	22,862,172	1,030,000	0	2025-07-15	291,994
		자립준비청 년 자립정 착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600,000	0	1,030,000		10,000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29건)			3,279,676,931	14642,711	14642,711	-	19,521,081	
25	가족 담당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 시설법정운 영비보조	3,263,118	3,027	0	2025-09-22	174,54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사 업보조	178,799	0	3,027		8,247
26	가족 담당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보조	3,260,091	15,000	0	2025-09-22	174,54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310,000	0	15,000		15,000
27	아동 복지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9,045	3,652	0	2025-05-14	4,742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자체)	시설비	20,000	0	3,652		43
28	아이돌봄 담당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523,506	151,667	0	2025-07-25	352,095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12,750	0	151,667		19,227
29	아동담 당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386,468	55,981	0	2025-12-04	553,424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4,746,860	0	55,981		1,252

-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9월 신규로 사업이 추진된 이후 2024년과 2025년 반복해서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이라는 동일사유로 예산 변경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해 보임.

〈표-10〉 '24, '25회계연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예산변경 내역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회계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025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022,000	228,000	0	2025-09-29	609,448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439,140	0	228,000		0
20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33,412,056	1,047,000	0	2024-10-28	898,15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225,000	0	1,047,000		0

다)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⁸⁾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의 경우 이체 내역은 없음.

8)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비 사용 관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변경내시(2025.9.24.)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총 1건, 23억 5,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지출함.
-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국고 보조사업(국45:시27.5:구27.5)으로 예측 가능한 연례 반복적 계속사업에 예비비가 투입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국비 변경내시가 적기에 하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조율이 필요해 보임.

〈표-11〉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 잔액 (a-b)	처리일자		예비비사유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2,350,000	2,350,000	0	2025-10-22	2025-11-28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추가 확보

- 9)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 이월 관련

- 예산의 이월은 예산운영 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¹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표-12〉 이월 제도의 구분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 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 38억 87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13>과 같음.
-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시립 키즈카페 조성비(서울식물원 등 4개소)의 추진공정상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집행부서는 사업 지연 관리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일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표-13〉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예산의 사고이월

(단위: 천원)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총2건)			2,265,000	1,921,902	953,549	968,353	-
1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시설비	2,257,500	1,914,402	953,549	960,853	시립 키즈카페 조 성비(서울식물원 등 4개소)의 사고 이월이며, 추진공 정상 예산집행시 기 미도래로 이월
2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감리비	7,500	7,500	-	7,500	

4)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 불용액은 ① 회계연도중 재해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②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책 효과 추진을 위한 집행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의 불용액은 총 570억 6,493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사유로 지출잔액이 약 375억원(6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14〉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57,065 (100%)	10,699 (18.7%)	89 (0.2%)	8,120 (14.2%)	614 (1.1%)	37,543 (65.8%)	- (-)

- 불용액 발생규모가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40건, 552억 631만원
으로 나타남.

〈표-15〉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실 1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천원, %)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계 (총40건)			1,441,054,806	1,381,970,166	55,206,305	-	-
1	저출생 담당관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벨 포인트제	577,720	384,165	193,555	33.5%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곤란, 고용노동부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는 선행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신 청 다소 저조 ▶ 2026년 출산휴가·육아 휴직 기업지원금으로 개 선
2	저출생 담당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2,024,650	1,402,564	622,086	30.7%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약에 따른 자격요건 강화 (보증금 3억 이하)로 대 상자 감소 및 집행잔액 발생
3	양성평등 담당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자체)	2,927,976	2,561,973	366,003	12.5%	시설 종사자 변동에 따 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 생
4	양성평등 담당관	시립 십대여성 건강센터 운영	809,369	584,608	224,761	27.8%	25.7.4.운영종료(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 발생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5	양성평등 담당관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071,418	3,869,973	201,445	4.9%	서울안심이 보안장비 교 체사업 낙찰차액 및 관제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6	양성평등 담당관	안심물품 지원	4,981,300	4,457,493	523,807	10.5%	안심헬프미·안심경광 등 물품계약 낙찰차액 발생
7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47,350,535	47,052,117	298,418	0.6%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8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	4,583,159	3,886,000	660,712	14.4%	연도 중 국비 감액내시 통보(2025.9.10.)에 따라 매칭 시비 불용 잔액 발 생
9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6,772,441	105,689,786	1,082,655	1.0%	연도 중 국비 감액내시 통보(2025.10.21.)에 따른 매칭 시비 불용 잔액 발 생(교육부 영유아교원지 원과-3084호)
10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94,679,012	392,615,049	2,063,963	0.5%	자치구 집행전망 대비 실집행액 감소
11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24,546,722	23,153,272	1,393,448	5.7%	연도 중 국비 감액내시 통보(2025.11.17.)에 따른 매칭 시비 불용 잔액 발 생
12	영유아 담당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3,881,092	91,218,538	2,662,554	2.8%	연도 중 국비 감액내시 통보(2025.11.17.)에 따른 매칭 시비 불용 잔액 발 생(교육부 영유아교원지 원과-3421호)
13	영유아 담당관	가정양육 수당 지원	28,711,011	27,063,279	1,647,732	5.7%	연도 중 국비 감액내시 통보(2025.9.26.)에 따른 매칭 시비 불용 잔액 발 생(교육부 영유아재정과 -3909호)
14	영유아 담당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98,262,200	183,510,821	14,751,379	7.4%	누리과정보육료 감액내 시에 따른 매칭 시비 집 행으로 불용액 발생(교 육부 영유아재정과 -3546('25.8.29.) 및 서울 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과-7872('25.9.1.))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5	영유아 담당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3,825,700	8,998,419	4,827,281	34.9%	공동주택 준공 지연에 따른 확충사업 미신청, 장기임차 어린이집 수요 감소 등
16	영유아 담당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5,776,085	5,593,600	182,485	3.2%	장애아동 현원 감소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 생
17	아이돌봄 담당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32,154,180	29,671,916	2,482,264	7.7%	당초 예산편성시의 면적 등 기준과 실제 선 정지들의 현황이 상이하여 조성비 일부 불용,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개관시기 연기로 일부 운영비 미집행
18	아이돌봄 담당관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4,705,222	3,059,675	677,194	14.4%	서울식물원 내 조성대상 지 변경(시의회 민간위탁 수정동의)에 따른 조성비 소요액 감소, 화곡점과 보라매공원점의 내외부 보완 등에 따른 개관시기 연기 및 목동점 보수 공사로 인한 휴관기 간 발생에 따른 운영비 미 집행 등
19	아이돌봄 담당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자체)	7,244,382	6,607,869	636,513	8.8%	온라인홍보 매체활용등을 통한 예산절감 및 센터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20	아이돌봄 담당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39,371,839	38,949,615	352,095	0.9%	센터 개소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21	아동 담당관	아동급식 지원	33,988,815	33,521,875	466,940	1.4%	본 사업은 연중 수시 발 생하는 결식우려 아동 급 식 지원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이 곤란한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 로, 사업 특성상 일정 수 준의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바, 1.4%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2	아동 담당관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912,280	803,819	108,461	11.9%	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3	아동 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3,456,435	103,017,544	438,891	0.4%	(민간위탁금)아동힐링센 터 개소지연, 종사자의 잦 은 입퇴사에 따른 인건 비 잔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종사자의 잦은 입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 액
24	아동 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6,835,148	6,611,408	223,740	3.3%	생활아동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5	아동 담당관	요보호아동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5,556,628	13,992,873	1,119,508	7.2%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 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 발생
26	아동 담당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8,464,080	7,455,900	504,090	6.0%	보건복지부 내시 (2024.12.23.)인원(16,944 명) 대비 실제 지원인원 (14,912명) 과소 발생
27	아동 담당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1,941,180	1,463,330	477,850	24.6%	신규사업(월세·기숙사비 지원) 예산 편성 대비 지원 인원 과소 발생
28	아동 담당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660,000	326,000	142,200	21.5%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인 원(2025.7.15.) 대비 지원 인원과소 발생
29	아동 담당관	입양아동가족 지원(보조)	4,285,692	3,765,689	304,492	7.1%	보건복지부 내시인원 (2024.12.19.) 대비 지원 인원과소 발생
30	아동 담당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7,442,333	17,150,339	204,577	1.2%	내시 사업량(명) 대비 실 제 아동발달지원계좌 적 립 아동 미달로 인한 미 집행액 발생
31	아동 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28,502,200	26,428,158	2,074,042	7.3%	회계분야 컨설팅 용역 낙찰차액 및 종사자 입 퇴사 등 변동에 따른 단 일임금지원 불용액 발생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32	아동 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485,310	4,310,639	174,671	3.9%	지역아동센터 폐업 및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 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33	아동 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9,330,487	28,777,063	543,513	1.9%	지역아동센터 폐업 및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 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 액 발생
34	가족 담당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3,245,091	3,070,547	173,198	5.3%	종사자 이직, 퇴직 등 변 동사항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인건비 감소
35	가족 담당관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4,926,882	4,744,107	182,775	3.7%	자치구 수요에 따라 일 부 예산 미교부로 집행 잔액 발생
36	가족 담당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 (자체)	478,500	328,800	149,700	31.3%	지원대상자 감소 추이 등으로 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등 학습비의 집행 부진
37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78,582,000	72,999,836	4,233,082	5.4%	여성가족부 감액 변경내 시 지연 통보(2025.9.26.) 로 감추경 반영이 연내 불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38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4,468,624	3,987,237	481,387	10.8%	지원대상자 감소 추이 등으로 교통비 집행 부 진
39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10,745,661	9,601,624	1,144,037	1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 소 폐지 등에 따른 집행 잔액
40	가족 담당관	아이돌봄 지원(보조)	65,491,447	59,282,646	6,208,801	9.5%	성평등가족부 감액내시 통보(2025.9.19.)로 감추 경 반영이 연내 불가하 여 집행잔액 발생

3 기금결산

- 여성가족실 소관 기금인 ‘양성평등가족기금’ 1종이 설치·운용 중으로 동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4,471만원임.
-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243억 3,473만원)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에 28억 1,086만원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15억 88만원이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전년 대비 13억 998만원이 늘어났음.

〈표-16〉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25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양성평등 가족기금	24,334,734	1,309,979	2,810,860	1,500,881	25,644,713

- 2025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의 원천은 ‘기타수입(47.8%)’, ‘예치금회수(26.1%)’, ‘이자수입(20.9%)’, ‘전년도 이월액(2.7%)’, ‘전입금(2.5%)’으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예치금(61.96%)’,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37.8%)’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17〉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3,945,594	100%	계	3,945,594	100%
전입금	100,000	2.53%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1,491,463	37.80%
이자수입	824,550	20.90%			
기타수입	1,886,310	47.81%	기본경비	9,419	0.24%
전년도 이월액	106,550	2.70%	예치금	2,444,713	61.96%
예치금회수	1,028,184	26.06%			
예탁금 원금회수	-	-			

-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액을 살펴보면, 2021년 15억 1,551만원에서 2025년 39억 4,559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2025년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누적된 다둥이카드 적립금 잔액(18억 979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일괄 편입되면서 전년 대비 수입액이 19억 2,793만원 증가하였음.

〈표-18〉 연도별 양성평등가족기금 운용내역(수입)

(단위 : 천 원, %)

구분	수입액						
	계	전입금	융자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1	1,515,506 (100.0)	- (-)	- (-)	600,000 (39.6)	541,103 (35.7)	361,415 (23.8)	12,988 (0.9)
2022	1,642,209 (100.0)	600,000 (36.5)	- (-)	- (-)	314,199 (19.1)	676,769 (41.2)	51,240 (3.1)
2023	1,916,881 (100.0)	100,000 (5.2)	- (-)	- (-)	758,027 (39.5)	1,032,306 (53.9)	26,548 (1.4)
2024	2,017,668 (100.0)	100,000 (5.0)	- (-)	- (-)	893,547 (44.3)	998,952 (49.5)	25,169 (1.2)
2025	3,945,594 (100.0)	100,000 (2.5)	106,550 (2.7)	- (-)	1,028,184 (26.1)	824,550 (20.9)	1,886,310 (47.8)

- 최근 5년간 기금 지출 중 예치금 비중이 2021년 20.73%에서 2025년 61.96%로 증가 추세임.
- 이는 기금의 가용재원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고유목적사업비 비중이 2021년 78.1%에서 2025년 37.8%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고유목적사업비 평균 비중인 53.4%이하 수준으로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 비중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19〉 연도별 양성평등가족기금 운용내역(지출)

(단위 : 천 원)

기금	지출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1	1,515,506	1,184,216	78.14	17,091	1.13	314,199	20.73
2022	1,642,209	869,125	52.92	15,057	0.92	758,027	46.16
2023	1,916,881	1,009,466	52.66	13,868	0.72	893,547	46.61
2024	1,911,118	872,239	45.64	10,695	0.56	1,028,184	53.80
2025	3,945,594	1,491,463	37.80	9,419	0.24	2,444,713	61.96
평균	2,186,262	1,085,302	53.40	13,226	0.71	1,087,734	45.80

- 2025회계연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14억 9,146만원으로, 주요 지출 항목은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6억 5,8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6,000만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단체지원(1억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5,000만원),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재개장(5,000만원),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5,000만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1억 2,100만원) 등임.

4 주요 사업 분석

가. 안심물품 지원 사업

1) 현황

- 안심물품 지원 사업은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인 시민 또는 1인 근무 점포 사업주 등에게 안심물품 3종인 ①안심벨, ②안심경광등, ③안심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 100%로 추진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안심벨은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직장·학교)를 대상으로 안심이앱과 연동되어 긴급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긴급물품이고, ②안심경광등은 1인 근무 점포에 설치하는 긴급신고 물품이며, ③안심장비는 1인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임.

〈안심물품 3종〉

		
안심벨(헬프미)	안심경광등	안심장비(안심홈세트)

-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49억 8,130만원으로, 이후 44억 5,74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억 2,381만원으로 불용률은 10.5%로 나타남.

〈‘안심물품 지원’사업 202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추경포함)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계	4,981,303		4,457,496		523,810		10.5
사무 관리비	4,741,300		4,217,493		523,807		11.0
	안심 물품 3종 ¹¹⁾	4,709,300	안심 물품 3종	4,185,493	안심 물품 3종	523,807	11.0
	홍보비	32,000	홍보비	32,000	홍보비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0,000	240,000		0		0

- 동 사업에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해당 과목에는 홍보비 3,200만원을 제외하고 안심물품 3종을 구매하기 위해 47억 9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집행 후 최종 불용액은 5억 2,381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임.
- 집행부서는 불용사유로는 안심벨 및 안심경광등 물품구매 낙찰차액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함.

11) 2025년 본예산 편성당시 안심물품 3종 관련 세부산출내역
 (안심벨) 34,093원*100,000개 = 3,409,300천원
 (안심경광등) 102,000원*10,000개 = 1,020,000천원
 (안심경광등 외부사인보드) 20,000천원
 (안심장비) 130,000원*2,000개 = 260,000천원

2) 검토의견

첫째, 법령등에 근거없이 제조업체가 안심물품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세입에 편입하는 것이 아닌 물품구매계약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 여성가족실은 안심벨 및 안심경광등 사업과 관련해 2025년도부터 실수요자 선별지원을 위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여 안심물품 신청시 일부 대상에게 자부담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였음¹²⁾.

〈안심벨 및 안심경광등 무료 및 유료 대상 및 자부담금〉

구분	무료	유료 (일부 자부담금)
안심벨	○ 수량 : 50,000개 ○ 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안전약자 ¹³⁾ 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 수량 : 50,000개 ○ 대상 : 이외 수요 있는 일반시민 ○ 자부담금 : 7,000원
안심경광등	○ 수량 : 5,000개 ○ 대상 :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1인 점포	○ 수량 : 5,000개 ○ 대상 : 연매출 104백만원 이상 1인 점포 ○ 자부담금 : 20,000원

(※물품 개당 단가 : 안심벨 29,647원, 안심경광등 99,128원, 최종 구매계약금 기준)

12) 양성평등담당관-2080, 2025.2.6. (2025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양성평등담당관-2081, 2025.2.6. (2025년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13)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 자부담금 결제 방법은 안심물품 지원희망 신청자가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직접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고, 향후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다시 서울시로 정산하는 수납대행 방식으로 설계하였음¹⁴⁾.

〈유료판매 안심벨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



(※안심경광등의 경우에도 동일¹⁵⁾)

- 그러나 사업방침 수립 후 집행부 내부 법률검토 결과 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 “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해 제조업체는 공법상 징수권한이 없어 제조업체가 신청자로부터 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지방회계법」¹⁶⁾등 관련 법령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집행부서는 제조업체가 신청자 자부담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제조업체가 서울시에 ‘자부담금 수령액을 돌려주는 방식’에서 ‘제조업체가 수령한 자부담금과 서울시가 제조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자부담금 정산 방식을 변경하였음¹⁷⁾.

14) 양성평등담당관-2080, 2025.2.6. (2025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p.8.)

15) 양성평등담당관-2081, 2025.2.6. (2025년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p.5.)

16)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7) 2026년부터는 市가 직접 신청자에게 자부담금을 수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사업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은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 2025.4.25.에 위와 같이 제조업체는 자부담금을 수령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 별다른 조치없이 2025년 안심벨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 11월에도 징수권한이 없는 제조업체가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그대로 수령한 뒤 2025.12.19.에 서울시와 제조업체가 물품구매대금과 자부담금을 상계처리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하였음.
- 또한 집행부서가 자부담금을 상계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는 같은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심벨 및 안심경광등 신청자의 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수입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세입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 과목 중 ‘기타 사업수입¹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자부담금을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변경계약을 통해 물품구매대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실제 집행부서가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년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예산(안) 제출시 안심물품 자부담금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다가 미수납하였음.
- 이와 관련해 집행부서는 결산자료 제출 당시 미수납 사유로 변경계약에 따른 상계처리로 인해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안심벨(헬프미) 보급 지연에 따른 자부담금 부족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미수납사유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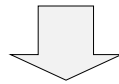
18)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 수입(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4.7. 행정안전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상세사유¹⁹⁾〉

(단위:천원)

요구번호 771. 2025년도 결산 관련 요구자료 (제출일 : 2026.5.21.)

예산 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B)	과부족액 (C=B-A)	차액 비율 (C)/(A)	과부족액 상세사유
기타 사업 수입	520,759 ²⁰⁾	146,059	108,390	△412,368	-79.2%	· (양성평등담당관) 안심물품 지원 사업 발생 수입 편성하였으나, 안심헬프미 기능, 디자인 개선으로 보급 시기가 지 연('25.11~12월)되어 당초 예 상물량보다 적게 배부되어 부 족수납 발생 (..생략..)



이메일 통해 결산 관련 제출자료 수정 (제출일 : 2026.6.5.)

예산 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B)	과부족액 (C=B-A)	차액 비율 (C)/(A)	과부족액 상세사유
기타 사업 수입	520,759	146,059	108,390	△412,368	-79.2%	· (양성평등담당관) 안심물품 (안심헬프미, 안심경 광등) 자부담금은 세입 처리 하지 않고 계약금액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하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 음. (..생략..)

- 결산 관련 요구자료는 의회의 공식적인 요구자료임에도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이를 이메일로 단순히 수정제출하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정이 필요해 보임.

19) 요구번호 771, 2025년도 결산 관련(전문위원실 요구자료), 제출일 2026.5.21. [1-2.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 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20) (안심물품 지원 사업, 기타사업수입 2025년 세입추계)

- 2025년 추계액 : 391,000천원

- 산출내역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및 안심경광등 유료판매 대금

▶ [(7,000원÷1.1(부가가치세)-280원(카드수수료))×50,000개](헬프미) +
[(20,000원÷1.1(부가가치세)-800원(카드수수료))×5,000개](안심경광등)
= 391,000천원

둘째,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안심벨(헬프미)이 당초 계획대로 배포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일정 지연 방지 및 성과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여성가족실 ‘2025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에 따르면 집행부서는 안심벨을 2025.2월경 물품구매계약 후 2025.6~7월경 1차 신청접수 및 지원 예정이었음²¹⁾.
- 그러나 실제로는 2025.5.2.일에서야 물품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이 긴급공고로 이루어졌고, 2025.6.23.일자로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1월에 이르러서야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등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되었음.

〈안심벨(헬프미) 사업 경과〉

예상 일자	실제 일자	내용
2025년 2~3월	2025.5.2.	물품구매 입찰공고
2025년 4월	2025.6.23.	물품구매 계약
2025년 6~7월	2025.11.4.~ 11.10.	1차 신청 및 지원

- 이로 인해 2025년 당초 지원 목표였던 안심벨 100,000개 중 연말까지 약 50% 수준인 50,377개만 배포되었으며, 미처 배포하지 못한 나머지 안심벨은 올해 계속 배포 중임.

〈2025년 안심벨(헬프미) 배포현황²²⁾〉

목표 지원	2025년 배포 (2025.12.31.기준)	2026년 배포 (2026.5.31.기준)	2025년 구입 후 미지급 안심벨
100,000개 (100%)	50,377개 (50.4%)	48,670개 (48.7%)	953개 (0.9%)

21) 2025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양성평등담당관-2080, 2025.2.6., p.10.

22) 서울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안심사업팀, 26.6.2. 업무메일 제출

- 2025년 안심벨(헬프미) 지원사업의 경우 본예산부터 예산이 편성 및 확정되어 집행부서가 사업발주시기를 사전에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이와 관련해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긴급입찰 공고와 안심장비 구매계약 및 배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11.5. 수) 회의록〉

○도문열 위원	긴급공고를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 이게 시민분들한테 빨리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공고가 5월에서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5월 이전에 공고를 미리 준비했었으면 정상적으로 됐을 텐데 5월에서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면이 있어서 아마 긴급공고 형태를 띠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향후계획에서 안심벨 신청·접수 및 배부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서울시 누리집에 보니까 신청기간이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예요.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략...)
○도문열 위원	목표가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배부하는 게 목표다?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네.
	(...생략...)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말이 다 되어서야 배부하고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에 배급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평가도 있어야 그다음 해를 준비하는데 그 부분도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합니다.
○도문열 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긴급입찰 형태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이고 아직 배부도 안 되었고 12월 연말에 배부를 목표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끝나기 전에 내년에도 지금 이 계획이 또 잡혀 있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그렇습니다.
	(...생략...)

○도문열 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고. (...생략...)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데도 제안서 제출 마감 10일 전에 긴급입찰 공고를 하여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네.
○도문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명심하고 감안해서 내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또한 2026년 본예산에서 안심벨(헬프미) 50,000개 신규 구매 및 지원을 위한 16억원의 예산이 편성 및 확정되었으나 2026.6.1. 현재 시점까지 해당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공고조차 게시되지 않고 있음²³⁾.
- 이는 2025년 당초 계획에 따라 배포 예정이었던 안심벨 100,000개를 모두 배포하지 못하여 이를 먼저 배포한 뒤 2026년 신규 구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2025년도 사업 추진 일정지연이 2026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 추진 지연은 단순히 다음연도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를 넘어 전체적인 사업성과 및 평가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따라서 집행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입찰·계약·배포 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물품 지원이 회계연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단순히 물품 지원 수량이라는 정량적 지표 뿐만 아니라 이용실적, 만족도 및 범죄예방 효

23) '26. 6월~7월 중 안심벨 제조·구매계약 예정임. ('26년 휴대용 안심벨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지원계획(양성평등담당관-2694(2026.2.11.), p.9.)

과 등 정성적 지표와 함께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²⁴⁾.

24) '25년 추진결과로 지원실적(총 50,388개)과 신고실적(신고 693건, 경찰출동 11건)만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성과 평가 실시 예정임.
(‘26년 휴대용 안심벨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지원계획(양성평등담당관-2694(2026.2.11.)), p.5., p8.))

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1) 현황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자치구 내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신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리모델링 공사, 놀이시설 설치 및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202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계	32,440,180	29,671,916	2,482,264	7.7
사무관리비	33,400	33,178	222	0.7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334,780	14,039,828	294,952	2.1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72,000	15,598,910	2,187,090	12.1

-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자치구별 조성 수요, 공간 확보 여부, 공사 일정 및 집행실적 등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20억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 회계연도에는 예산 변경 이후 약 2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2) 검토의견

첫째, 실제 선정 규모가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음에도 선정된 자치구에 시설비를 전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집행부는 2025회계연도 불용사유로 설계변경, 조성일정 변경, 개관 연기 및 실제 조성비와 편성액 간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불용현황 및 사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5	32,154,180	29,671,916	2,482,264	13.0%	당초 예산편성시의 면적 등 기준과 실제 선정지들의 현황이 상이하여 조성비 일부 불용,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개관시기 연기로 일부 운영비 미집행

- 그러나 2025회계연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 54개소 중 실제 선정된 곳은 25개소에 불과하였음에도 시설비 예산의 86.3%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산서에 기재된 불용사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로,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규모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시설비 집행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구립 키즈카페 시설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180억 7,200만원 중 2억 8,600만원을 변경하고, 155억 9,891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21억 8,709만원으로 불용률은 12.1%에 수준임.

〈구립 키즈카페 시설비 예산 변경 및 불용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변경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72,000	△286,000 (변경)	15,598,910	2,187,090	12.1%

- 당초 예산 편성 시 목표했던 54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개소만 최종 키즈카페 조성지로 선정되었음에도, 관련 시설비 보조금 예산의 대부분이 자치구에 교부된 것임.
-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당초 예산을 선급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정 선정 규모 대비 실제 선정 규모에 여유가 발생함에 따라 총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자치구에 조성비를 전액 교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집행잔액 상당 부분이 선정 자치구에 대한 시설비 전액 교부를 통해 집행됨에 따라 불용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이 실제 사업 규모와 집행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에는 사업대상 선정 결과가 당초 예산편성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감액하는 등 실제 집행 가능 규모를 반영한 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실제 사업 착수가 어려운 대상지에도 시설비를 선제적으로 교부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시설비 교부기준 및 집행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집행부는 2025년 선정지에 대하여 시설비를 교부하였으나,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대상지는 놀이공간 조성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건물 공사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2025년 서울형 키즈카페(구립) 조성 현황〉

연번	자치구	행정동	선정시기	진행 현황(2026. 5. 기준)	설치비교부액 (단위:천원)
1	노원구	상계2동	25년 1차 (2025.2.)	· 26년 4월 개관 완료	385,400
2	마포구	서교동1호	25년 1차 (2025.2.)	· 놀이공간 공사 중이며, 6월 개관 예정	814,200
3	강서구	등촌제3동	25년 1차 (2025.2.)	· 6월 개관 준비 중	610,000
4	금천구	시흥제2동	25년 1차 (2025.2.)	· 6월 개관 준비 중	1,171,760
5	관악구	성현동	25년 1차 (2025.2.)	· 놀이공간 공사 중이며, 8월 개관 예정	1,600,000
6	서초구	양재2동	25년 1차 (2025.2.)	· 건물(구룡주차장) 공사 착공하였고 건물 준공('27.6.) 이후 놀이공간 착공 예정	1,568,000
7	종로구	송인1동	25년 2차 (2025.4.)	· 놀이기구 설치 중이며, 7월 개관 예정	828,000
8	동대문구	장안2동	25년 2차 (2025.4.)	· 주민동의 부결로 철회	0
9	강북구	인수동	25년 2차 (2025.4.)	· 놀이공간 설계착수하였고, 11월 개관 예정	449,390
10	은평구	불광1동	25년 2차 (2025.4.)	· 놀이공간 설계착수하였고, 9월 개관 예정	800,000
11	양천구	신월7동	25년 2차 (2025.4.)	· 6월 개관 준비 중	226,350
12	동대문구	이문2동	25년 3차 (2025.6.)	· 건물(북한청사) 설계착수하였고, 건물 준공('26.12.) 이후 놀이공간 착공 예정	651,520
13	서대문구	홍은2동	25년 3차 (2025.6.)	· 놀이공간 공사중이며, 7월 개관 예정	1,200,000
14	마포구	도화동	25년 4차 (2025.8.)	· 놀이공간 공사중이며, 7월 개관 예정	421,000
15	마포구	염리동	25년 4차 (2025.8.)	· 놀이공간 설계착수하였고, 12월 개관 예정	401,700
16	강서구	공항동	25년 4차 (2025.8.)	· 놀이공간 공사중이며, 10월 개관 예정	300,000
17	중구	장충동2호	25년 5차 (2025.10.)	· 사전절차(무상임차 협의) 진행 중	386,000
18	성동구	옥수동	25년 5차	· 사전절차(조례 개정, 예산확보) 진행 중	273,840

연번	자치구	행정동	선정시기	진행 현황(2026. 5. 기준)	설치비교부액 (단위:천원)
			(2025.10.)		
19	동대문구	이문1동	25년 5차 (2025.10.)	· 건물(교회신축) 공사착공하였고, 건물 준공('27.2.) 이후 놀이공간 착공 예정	302,460
20	서초구	방배2동	25년 5차 (2025.10.)	· 놀이공간 공사 중이며, 9월 개관 예정	644,000
21	영등포구	대림3동	25년 5차 (2025.10.)	· 놀이공간 설계착수하였고, 11월 개관 예정	516,000
22	동작구	노량진1동	25년 5차 (2025.10.)	· 놀이공간 공사 중이며, 8월 개관 예정	426,000
23	관악구	신사동	25년 5차 (2025.10.)	· 26년 1월 개관 완료	202,840
24	관악구	인현동	25년 5차 (2025.10.)	· 놀이공간 설계착수하였고, 10월 개관 예정	600,000
25	성북구	길음1동	25년 5차 (2025.10.)	· 건물(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착공하였고, 건물 준공('28.12.) 이후 놀이공간 착공 예정	0

- 이는 시설비 교부 여부가 사업 추진단계 및 집행 가능성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더욱이 2025년 선정시설 가운데 연내 개관한 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일부 대상지는 2027년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집행 가능 시기와 무관하게 시설비가 선제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²⁵⁾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건물 확보,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가 교부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대상지 선정 및 교부 과정에서 관련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원칙〉²⁶⁾

1. 예산집행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1-1. 예산 이월의 합리적 운영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 **연례적으로 이월 비율이 높은 감리비, 시설비 등의 통계목이 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 신규발주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 시점 이전에 사업비가 장기간 교부·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6)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6. 1. 2.]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보육 수요 해소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2014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202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계	13,825,700	8,998,419	4,827,281	34.9
자치단체 자본보조	13,825,700	8,998,419	4,827,281	34.7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별설명서상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각각 50%로 명시되어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2025 본예산 사업설명서〉

지원형태	근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50%	50%	

- 한편 최근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시비에서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2) 검토의견

첫째, 국비는 전액 집행되는 반면 시비에서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는 만큼 시비 추가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26억 812만2천원은 전액 집행된 반면 시비는 98억 9,984만4천원 중 63억 9,029만7천원만 집행되고 35억 95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예산현액)	보조금수령액㉑	집행액㉒	집행잔액 = ㉑ - ㉒
계	13,825,700	12,507,966	8,998,419	3,509,547
국비	3,925,856	2,608,122	2,608,122	0
시도비	9,899,844	9,899,844	6,390,297	3,509,547

- 이는 국비 매칭분은 실제 사업수요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 반면, 시비 추가편성분은 실제 집행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48억 2,728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9%에 달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공동주택 준공 지연에 따른 확충사업 미신청 및 장기임차 어린이집 수요 감소 등을 주요 불용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최근 3년간 불용 현황 및 사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5	13,825,700	8,998,419	4,827,281	34.9%	공동주택 준공 지연에 따른 확충사업 미신청, 장기임차 어린이집 수요 감소 등
24	15,818,180	14,621,061	1,197,119	7.6%	24년 승인 신축 1건 보조금 미교부(자치구 중앙투자심사의뢰 등 사업일정 감안)
23 (균특)	19,802,630	10,673,307	9,129,323	46.1%	확충개소 수는 목표와 동일하나, 저출생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로 신축, 매입 등 지원규모가 큰 확충유형(최대 30억)이 감소하고 공동주택관리동 및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 전환 등 비용절감형 확충(최대2.4억)이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액 차이 발생

-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일정과 장기임차 수요 변화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변수에 해당하는 만큼, 반복적인 대규모 불용은 사업수요 예측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사업추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자치구별 사업 추진현황, 공동주택 준공 일정 및 실제 수요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요 예측과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재원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관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개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각각 50%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지역의 토지매입비 및 건

축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국비 약 30%, 시비 약 70%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개년 예산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5년	2024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27,197	13,825,700	15,818,180
국비	4,242,091(35.3%)	3,925,856(28.4%)	4,514,740(28.5%)
시비	7,785,106(64.7%)	9,899,844(71.6%)	11,303,440(71.5%)
산출근거	신규 국공립 40개소 확충 신규40개소*300,679,925원	신규 국공립 40개소 확충 신규40개소*345,642,500원	신규 국공립 40개소 확충 신규40개소*395,454,500원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을 각각 50%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국비 매칭분(5:5)과 서울시 자체 추가지원분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통합 편성²⁷⁾ · 집행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별설명서만으로는 실제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서울시 자체 추가지원 규모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 과정에서도 시비 추가지원분의 집행실적과 불용 규모를 별도로 관리 ·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⁸⁾ 별표 10에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비 매칭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서울시 자체 추가지원 사업비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간 재원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비 추가지원 규모 및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 분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7) 2025년 여성가족실 사업설명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담비율, p.395

2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시행 2025. 12. 16.] [행정안전부훈령 제415호, 2025. 12. 16., 일부개정]

라. 서울여성가족재단 순세계잉여금

1) 현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결산심사에서는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출연금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최종 잔액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여성가족재단의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6억 6,14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4,014만 3천원 대비 약 28억 2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8억 3,631만 7천원, 2024년 18억 4,014만 3천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46억 6,149만 9천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서울여성가족재단 최근 3년간 출연금 및 순세계잉여금〉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출연금	172억 3,914만원	191억 2,380만원	168억 4,655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6,150만원	18억 4,014만원	18억 3,632만원

-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시설운영수입 초과 달성(4.1억원), 전년도 내부유보액(7.7억원), 지정기부금 잔액(29.2억원), 사업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5.6억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사유〉

구분	금액
시설운영수입 초과 달성	4.1억원
전년도 내부유보액	7.7억원
사업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5.6억원
지정기부금 잔액	29.2억원
합계	46.6억원

2) 검토의견

-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및 2024년 약 18억원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25년 46억 6천만원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재단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정기부금 잔액(29.2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은 차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더라도 시설운영수입 초과분(4.1억원), 내부유보액(7.7억원), 사업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5.6억원) 등 약 17.4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2023년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과 내부유보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업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수립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바,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지정기부금 사업의 경우에도 상당 규모의 재원이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편성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

1. 현황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친화제도 이행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사업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포인트 및 인센티브²⁹⁾〉

핵심지표 및 포인트		
지 표		포인 트
① 다자녀 근로자 지원	예) 승진, 인사상 우대, 특별수당 지원 등	50P
② 워라벨 포인트제 컨설팅,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	예) 출산 축하금 등	50P
③ 임신·출산·양육 직원 격려	예) 임신 직원, 육아휴직 복직 직원 1인당	건당 100~1,000P
④ 법정 양육친화제도 활용	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남성 2배)	건당 500~1,000P
⑤ 미래세대 지원	예) 유연근무제 활용, 반반차, 결혼 등	건당 50~1,000P

※ 합산된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산정, 기업규모 고려

등급 및 인센티브 ※ 인센티브는 지속 발굴 예정		
등 급		인센티브
진입형 (100P~)	성장형 (500P~)	선도형 (1,000P~)
		서울시장 표창, 기업홍보 지원,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일반용역 가점(2점), 지방보조사업 가점(3점)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가점, 하이서울기업 가점,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자격 부여, 일반용역 가점(1점), 지방보조사업 가점(2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이자차액 지원 및 보증한도 우대, 선금 100% 지급자격, 일반용역 가점(0.5점), 지방보조사업 가점(1점)

- 2024.6.20.부터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하였고, 2025년부터는 진입형 등급 이상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3종(①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月20만원x최대6개월), ②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月10만원x최대12개월), ③서

29) 저출생담당관-1862, 2025.2.17. (2025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추진계획)

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90만원x1개월))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서 19억 2,700만원이 편성 및 확정된 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서 13억 4,928만원을 감추경하여 최종 예산 5억 7,772만원 중 3억 8,41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9,356만원으로 불용률은 33.5%로 나타남.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사업 202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 (A)	제2차 추경 (B)	증감 (A-B)	지출액 (C)	불용액 (B-C)	불용률 (%)
계		1,927,000	577,720	△1,349,280	384,165	193,555	33.5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0	7,000	-	7,000	-	-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1,707,500	358,220	△1,349,280	183,475	174,745	48.8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12,500	212,500	-	193,690	18,810	8.9

2. 검토의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감추 경하였음에도 예산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사전절차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 편성·확정 금액(19억 2,700만원)의 70%인 13억 4,928만원을 감추경하였음에도 1억 9,356만원이 불용되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³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³¹⁾에서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서는 동 사업을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음.
- 특히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정부정책 확대에 따른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또는 정책환경 변화 시 사업내용 재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의완료’가 되었던 만큼,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부 부처와의 밀접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었음.

30)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1)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7.) 행정안전부, p.350

〈‘인센티브 3종’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협의일자)	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조건부 협의완료 (2024.11.27.)	향후 사업내용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와 별도 사전협의 조건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조건부 협의완료 (2024.11.7.)	고용노동부 사업 등 정부 정책 확대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조건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조건부 협의완료 (2024.12.2.)	고용노동부 사업 등 정부 정책 확대되고 있어 정책환경 변화 시 사업 내용 조정하여 재협의 조건

- 그럼에도 사전 조율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 집행부서는 불용사유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곤란’ 및 ‘고용노동부 지원 결정 후 지원 등 선행절차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 다소 저조’를 들고 있음.
- 이는 결국 집행부서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분석과 집행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 편성이 성급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법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 대비 실제 지출을 20%도 하지 못한채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사업 본예산 대비 지출액〉

예산과목	본예산 (A)	추경 후 최종 예산	지출액 (B)	본예산 대비 지출액(B/A, %)
계	1,927,000	577,720	384,165	19.9%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액 시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역시 동일한 문제를 나타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개요³²⁾〉

- **[지원대상]** 1)~4)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
 - 1) **출산조건** (2025.1.1.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 2) **소득조건** (중위180% 이하)
 - 3) **거주조건**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또는 전세 3억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 4) **중복금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또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등)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2년간, 총 720만원)
 - 출생아 1명당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간 지원
- **[지원방법]** -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1회 지급시 180만원),
 - 선지출·사후지급 방식

- 동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약(2024.12.2.)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7억 1,465만원으로, 이후 6억 9,000만원을 변경하여 감액하였음에도 14억 256만원만 집행하여 불용액은 6억 2,209만원으로 불용률은 30.7%로 나타남.

32) 저출생담당관-5949(2025.5.21.) 2025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세부 실행 계획, p.4~6.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202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추경포함)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계	2,714,650	-690,000	2,024,650	1,402,564	622,086	30.7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50	0	4,650	4,617	33	0.7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484,000	-690,000	1,794,000	1,184,552	609,448	34.0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26,000	0	226,000	213,395	12,605	5.6

- 따라서 집행부서는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된 사전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의 장애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정교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